

춘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52945, 2020나52952(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소유권말소등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순

피고, 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한재환

2. E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8가단56653, 2019가단53910 (병합)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2/3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1)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6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7.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는 피고 E에게 위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나. 1)항은

주위적 청구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그 수량만을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구하는 부분인 위 나. 2), 3)항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2017. 4. 20. 의사무능력 상태인 망인과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증여계약에 기초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망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 E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고 다투고, ② 피고 D는,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E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E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말소의 범위

1)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이고,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이 피고 E은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들은 각 2/9 지분 합계 6/9 지분이므로,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에 관한 피고 E, 피고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의 상속분 합계 2/3 지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4. 21. 접수 제3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E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7. 5. 4.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은 해당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2019. 3. 23.에 이르러 비로소

금전채권으로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위 채권은 위 매매계약이 2017. 5. 4. 체결된 이후에 성립된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D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상속분할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거나 이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정, 판사 조미연, 판사 김시원